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21 발의연월일: 2021. 4. 15.

발 의 자:최형두·조수진·김정재

정운천 · 이철규 · 박완수

유창현 • 박수영 • 유상범

윤한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.

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방화막에 대하여는 「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」(문화체육관광부고시)에 따라 '방화막'의 정의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방화막의 설치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.

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화막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.

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어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6, 제12조제1항제1호, 제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).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6(방화막등의 설치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화막(무대에서 발생되는 화재나 비상시에 객석과 무대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있는 시설을 말한다)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기구(이하 "방화막등"이라 한다)를 무대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방화막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"무대시설"을 "무대시설(방화막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제33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3. 제11조의6에 따른 방화막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1조의6에 따른 방화막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화막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운영자는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방화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조의6(방화막등의 설치) ①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
	<u>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</u>
	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
	여 방화막(무대에서 발생되는
	화재나 비상시에 객석과 무대
	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
	시설을 말한다)과 그 밖에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・기구
	(이하 "방화막등"이라 한다)를
	무대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.
	② 방화막등의 성능 및 설치기
	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<u> 령으로 정한다.</u>
제12조(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)	제12조(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)
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	①
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	
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	
진단 전문기관(이하 "무대시설	
안전진단 전문기관"이라 한다)	
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	
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	
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	

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.

- 1.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
- 2. (생략)
- ② ~ ⑦ (생 략)

제33조(행정처분) ① 특별자치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~ 5의2. (생 략) <신 설>

6. • 7. (생략)

② (생 략)

제4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1
무대시설(방화막등을 포함한
다. 이하 같다)
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33조(행정처분) ①
<u>.</u>
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5의3. 제11조의6에 따른 방화막
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
6.·7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43조(과태료) ①
 1 O (취레리 가ბ)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11조의6에 따른 방화막등
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